

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참전유공자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12 월 8 일

여 수 시 장 서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2262호

붙임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한정함.이하”를 “한정함. 이하”로 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타인과 재혼할 경우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권은 소멸되며 다시 이혼한다 하더라도 소멸된 지급권이 부활하지 않는다.

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
제6조제2항 중 “의뢰하여 확인해야 한다”를 “의뢰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 ~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(변경) 신청서

신청인 (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)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연락처	
사망한 참전유공자	성명	생년월일	
	참전등록번호	유공 구분 <input type="checkbox"/> 6.25 참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월남 참전	사망일
예금계좌 (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)	금융기관명	예금주 성명	
	계좌번호		

「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구비서류	1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확인원 1부 2.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 3. 신청인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:

(서명 또는 인)

금융정보(입금계좌 확인정보) 제공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(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)를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:

(서명 또는 인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 유공자(이하 “유공자”라 한다) 및 배우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배우자”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(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함.이하 같다)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신 설></p> <p>제4조(지원사업) ①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85세 이상인 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월을 지급한다. 다만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한정함. 이하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타인과 재혼할 경우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권은 소멸되며 다시 이혼한다 하더라도 소멸된 지급권이 부활하지 않는다.</p> <p>제4조(지원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삭 제></p>

는 사람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.

<신 설>

제6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
제6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의뢰할 수 있다.